



# [축산법령]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중 일부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114호, 2008.12.12) 중 다음과 같이 개정

별표1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 중 '1. 동물'과 '2. 동물의 생산물 중 육류(육가공품을 포함한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동물

구분	수입금지지역
가. 우제류동물(반추동물 제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이외의 지역
나. 반추동물	호주, 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다.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를 포함한다)·가금초생추·가금종란·식용란	호주, 뉴질랜드, 대만, 미국, 프랑스, 덴마크, 일본, 스페인, 네덜란드, 헝가리, 캐나다, 영국 이외의 지역
라. 타조류(초생추 및 종란 포함)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덴마크, 스페인, 캐나다 이외의 지역

## 2. 동물의 생산물 중 육류(육가공품을 포함한다)

구분	수입금지지역
가. 쇠고기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미국 이외의 지역
나. 돼지고기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 벨기에, 멕시코, 칠레, 네덜란드, 스페인, 아일랜드, 프랑스, 슬로바키아, 스위스, 이탈리아(가공품에 한함), 영국 이외의 지역
다. 산양고기, 양고기	호주, 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라. 사슴고기	호주, 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마. 가금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선, 냉장, 냉동 가금육 : 대만, 호주, 브라질, 미국, 프랑스, 칠레, 덴마크, 일본, 네덜란드, 헝가리, 캐나다, 영국 이외 지역</li> <li>· 열처리된 가금육 : 대만, 호주, 브라질, 미국, 태국, 중국, 프랑스, 칠레, 덴마크, 일본, 네덜란드, 헝가리, 캐나다, 영국 이외의 지역</li> </ul>
바. 타조고기	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사. 캥거루고기	호주 이외의 지역
아. 자비우육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이외의 지역

##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